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
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. 의결주문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률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요건과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유를 규정하고,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한도 및 비용 납부 절차 등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(안 제4조제3항 신설)

-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* 지자체가 지하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

* ① 처리시설 옆 주택, ②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

나.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(안 제4조제4항 신설)

- 지자체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*에 한해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결정

* ① 기존시설에서 처리, ② 다른 지자체와 협약, ③ 폐기물발생량 소량

다.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 구체화(안 제4조제5항, 별표 5 신설)

- 별표 5(납부금액 산정기준)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(시설

설치비, 부지매입비)의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

라.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완화(안 제7조, 별표 1)

-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던 입지선정위원회 정원, 위촉기준 등 구성요건을 합리화*하고, 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* 위원 추천권(지자체 의회, 주민대표 등), 위원별 구성원수 등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좀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

마. 주민편익시설 설치 확대(안 제24조)

-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한도 상향*

*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 → 20% 이내

-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*도 함께 납부

*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% 이내

바. 주민지원기금 조성 확대(안 제25조)

- 폐기물 반입·처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반입 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상향(현행 10→20%)

사. 시행일 및 적용례(안 부칙)

-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,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자체가 납부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6조제1항 전단”으로, “이 조에
서 “택지등””을 ““택지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6조제1항”
을 “법 제6조제1항 전단”으로, 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”을 “음식물류
폐기물 처리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
한다.

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, 해당 지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
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
이하 같다)이 지상 설치와 지하 설치의 타당성을 비교 · 검토하여 폐기
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.

제4조제3항과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
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
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
“제5항”으로, “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

다. 이하 같다)”를 “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전단 중 “법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6조제2항”으로, “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”를 “않고 납부금액을 내”로,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”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”로 한다.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받아 처리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(이하 이 조에서 “주택”이라 한다)이 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

2.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

④ 법 제6조제2항에서 “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

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만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
2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함께 처리하기로 협의하였거나 협의할 계획이 있는 경우
3.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소량으로 예측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⑤ 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제4조제8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, 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”을 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”로, “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

에는”을 “있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, 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”를 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”로, 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”을 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”으로, “관리하여야”를 “관리해야”로 한다.

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별 구성원수, 위원 추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(용지비, 보상비,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)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내기로 한 경우에는 설치비용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10의”를 “20의”로, “환경부장관 또는”을 “환경부장관이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출연하여야”를 “출연해야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결정하여야”를 “결정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환경부장관 또는”을 “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”로, “고시하거”를 “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하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립하여야”를 “수립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되어야”를 “포함돼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개하여야”를 각각 “공개해야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조사·공개하여야”를 “조사·공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선정하여야”를 “선정해야”로,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제1항”을 “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6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제1호 중 “법 제5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5조제3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·도지사등”을 “시·도지사등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적용례)

제4조, 제24조, 제25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4조 제7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납부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 모든 사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(제7조 관련)

1. 입지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2.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.
3.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4.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가. 제20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
 - 나.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)
 - 다.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의회 의원
 - 라.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전문가
 - 1)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
 - 2) 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
 - 3)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

[별표 5]

납부금액 산정 기준(제4조제5항 관련)

$$\text{납부금액} = \text{시설 설치비} + \text{시설 부지 매입비}$$

1.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begin{aligned} \text{시설 설치비} = & \text{가(소각시설 설치비)} + \text{나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)} \\ & + \text{다(주민편익시설 설치비)} \end{aligned}$$

가. 소각시설 설치비

$$\text{소각시설 설치비} = 1) \times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$$

- 1) : 해당 택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) 배출량(톤)
- 2) : 변동계수(1.3 미만,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정함.)
- 3) : 가동률(1.2)
- 4) :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- 5) :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나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

$$\text{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} = 1) \times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$$

- 1) : 해당 택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류 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) 배출량
- 2) : 변동계수(1.3 미만,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정함.)
- 3) : 가동률(1.2)
- 4) :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(사료화, 퇴비화, 바이오가스화시설 등)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
5) :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다. 주민편익시설 설치비

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[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]

비고

1. “가동률”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보수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일수 300일을 기준으로 한 값을 말한다.
2. 해당지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납부금액 통보시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실시설계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“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”, “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”를 각각 적용하지 않고, “톤당 실시설계 단가”를 적용할 수 있다.
3. 나목 중 “폐기물 처리시설 종류(사료화, 퇴비화, 바이오가스화시설 등)”는 해당지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를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2.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시설 부지 매입비} = \text{가(시설 부지 소요면적)} \times \text{나(부지 매입단가)}$$

가. 시설 부지 소요면적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각각 시설 부지 소요면적을 계산해내 합한다.

1) 시설 부지 소요면적(m²)

$$\text{시설 부지 소요면적(m}^2\text{)} = [\text{가} + \text{나} + \text{다} + \text{라}] \times 100/\text{전폐율(\%)}]$$

가) 폐기물처리시설 면적[시설용량(톤/일) × 소요면적(m² · 일/톤)]

나) 주민편익시설 면적(m²)

다) 관리동 면적(m²)

라)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(m²)

2) 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

가) 시설부지 면적

구 분		소 요 면 적		비 고
		기본면적	추가면적	
폐기물 처리시설	50톤/일 이하	3,000㎡	-	-
	50톤/일 초과 100톤/일 이하	3,000㎡	20㎡/톤	1기 기준 4,000㎡(1,212평) 이하
	100톤/일 초과 300톤/일 이하	4,000㎡ (100톤/일 기준)	25㎡/톤	2기 기준 9,000㎡(2,727평) 이하 100톤 초과물량 추가면적 산정 합산
	300톤/일 초과 500톤/일 이하	9,000㎡ (300톤/일 기준)	5㎡/톤	2기 기준 10,000㎡(3,030평) 이하 300톤 초과물량 추가면적 산정 합산
	500톤/일 초과	10,000㎡/톤 (500톤/일 기준)	5㎡/톤	2~4기 기준 15,000㎡(4,545평) 이하 500톤 초과물량 추가면적 산정 합산
관리동	500톤/일 이하	330㎡(100평)	-	작업인원 35명 이상 50명 미만 기준
	500톤/일 초과	500㎡(152평)	-	작업인원 50명 이상 70명 미만 기준
세차동 등 기타시설	500톤/일 이하	330㎡(100평)	-	-
	500톤/일 초과	500㎡(152평)	-	-

비고: 구분란 중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.

나) 주민편익시설 면적은 가) 표에 따른 시설 부지면적(폐기물처리시설, 관리동,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)의 20퍼센트(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)

나. 부지 매입단가

- 1)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(㎡)당 조성원가.
- 2)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 계산해서 정할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외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단가를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① <u>법 제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”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(이하 이 조에서 “택지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</u>	제4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① <u>법 제6조제1항 전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“택지등”----- -----.
② <u>법 제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”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</u>	② <u>법 제6조제1항 전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-----.
③ <u>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.</u>	③ <u>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,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상 설치와 지하 설치의 타당성을 비교·검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</u>

1.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: 제2항에 따른 소각 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
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

가. 소각시설의 경우: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,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

기로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받아 처리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(이하 이 조에서 “주택”이라 한다)이 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

2.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

나.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
의 경우: 1일 처리능력 30
톤 규모의 퇴비화·사료화
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
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
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
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
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
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
금액

<신 설>

④ 법 제6조제2항에서 “해당 지
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
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
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
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
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
을 함께 처리할 만한 시설이
설치되어 있거나 「자원순환
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기본
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
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
획에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

<신 설>

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

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

2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함께 처리하기로 협의하였거나 협의할 계획이 있는 경우

3.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소량으로 예측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⑤ 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⑥ 제5항-----

----- 특별

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
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
같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
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
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
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
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
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
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납부계
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
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
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
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
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
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
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
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
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
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
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
할 수 있다.

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
부받은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

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
구-----
-----.

⑦ 법 제6조제2항-----
----- 않고 납
부금액을 내-----

----- 특
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
해야 -----

----- 통
보해야 ----. ----- 특별자치
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
군수 ·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
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---

-----.

⑧ 제5항-----
----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

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, 매립시설 및 퇴비화·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

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

⑧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
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--

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
있는 경우 -----

⑨ 제5항-----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--

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-----

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-----

⑩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
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(財源)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)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(이하 “입지선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. <단서 신설>

제24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)

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(용지비, 보상비,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)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,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

법 제6조제2항-----

-- 관리해야 ----.

제7조(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) --

---. 다만,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별 구성원수, 위원 추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24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)

① -----

---- 20의 -----

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25조(주민지원기금의 산정) ①
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·규모,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,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

-----.

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(용지비, 보상비,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)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내기로 한 경우에는 설치비용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25조(주민지원기금의 산정) ①

----- 20의 -----

----- 환경
부장관이 정하여 환경부장관의

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.

제27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,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

승인을 거쳐 정하거나 -----

② -----

----- 출연해야 -----

제27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① -----

----- 결정해야 -----

② -----

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,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

----- 환경부장관이
정하여 고시하거나 -----
--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
정하거-----
-----.

③ -----

--- 수립해야 -----.

④ -----
----- 포함되어야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
공개하여야 한다.

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
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
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
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
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
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
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33조(환경상 영향의 조사·공
개)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
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
을 조사·공개하여야 하는 대상
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
른 시설로 한다.

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
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
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
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
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
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
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, 선정
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
를 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
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

공개해야 ----.

⑥ -----

----- 공개해야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환경상 영향의 조사·공
개) ① -----

-- 조사·공개해야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선정해야 -----

----- 해야 한다. -----

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,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35조(권한·업무의 위임 등) ①
(생략)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
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
승인

2.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
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

제1항

③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권한·업무의 위임 등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_____

1. 법 제5조제3항제1호-----

--

2. _____

계획의 승인 및 공고(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<u>시·도 지사등인</u>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 ③ (생 략)	----- ----- <u>시·도 지사등,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의 장</u>-----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401